

비전임교원 임용 등에 관한 시행 내규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각 종류별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에서 위임한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비전임교원의 채용절차, 심사방법, 임용계약, 재임용 기준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단, 명예교수 및 공개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비전임교원은 공개채용에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조(채용구분)

- ① 비전임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하되,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교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제3조(채용계획) 교무처장은 학기단위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별 채용분야 및 인원을 파악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확정한다.

제4조(채용광고) 교무처장은 교원을 공개경쟁으로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마감일 7일 전까지 채용분야, 채용인원, 자격기준, 심사기준, 기타사항 및 유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췌하여 학교홈페이지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.

제5조(채용대상자 우대 등)

- ① 채용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다.
- ② 본교 전임교원 및 강사가 채용 분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직원을 제출한 후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 공개채용

제6조(서류접수)

- ① 공개채용은 지원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서류로 제출받는다.
- ② 지원 등록내용 또는 서류에 중대한 오류나 허위가 있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7조(심사구분) 심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초심사(서류) ;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도 심사

2. 전공심사(서류) :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등에 대한 심사
3. 면접심사 : 전공심사 내용 및 교육자적 자질·열정, 인성, 가치관 등에 대한 면접심사

제8조(심사절차)

- ① 비전임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심사위원회”)는 기초 및 전공심사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제8조의 심사항목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.
- ② 각 단계별 심사항목은 <별표1>과 같이 하되, 심사위원회에서는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.
- ③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초·전공심사에서 3배수 내외로 선발한 후 이들만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 단, 면접심사 대상자 인원은 각 학과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.
-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초심사를 A, B, C, D, E로 평가한 후 B이상이 과반수 이상이면 적합(P), 과반수 미만이면 부적합(F)로 평가한다.
-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전공심사, 면접심사를 100점 만점으로 “우수”는 평가기준점수의 80점 이상을 부여하고, “보통”은 80점 내지 60점을 부여하며, “미약”은 60점 내지 40점을 부여한 후 산술 평균으로 한다.
- ⑥ 심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전공심사만 실시하거나, 전공심사를 생략하고 면접심사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⑦ 심사위원회에서는 면접심사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자 중에서 상위득점자 순으로 최대 3인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하되, 그 인원수는 각 학과의 형편에 맞게 하도록 하고 책임자가 없는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.
- ⑧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 및 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⑨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경우,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차순위 득점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9조(비전임교원 임용심사위원회) ① 학과장은 소속 학과 강사의 신규채용·재임용 등에 대한 심사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 비전임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“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심사위원회는 학과장 또는 원장을 위원장(당연직)으로 하며, 학과장(원장)을 포함하여 소속학과 전임교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심사위원 수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특별채용

제10조(특별채용심사위원회 구성)

- ① 학과장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심사위원회(이하 본조 및 제11조에서 ‘심사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한다.
- ②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인원은 비전임교원 채용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.

제11조(특별채용 절차) 비전임교원의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1. 심사위원회는 특별채용을 위한 국내·외 전공 인력풀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교원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2.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 및 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

제4장 임용절차

제12조(임용예정자 통보) 임용예정자 통보는 합격통지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, E-메일 또는 문자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3조(임용서류제출)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임용예정 통보를 받은 자는 인적사항과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전력조회 등)

- ① 교무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채용예정자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 또는 확인한다.
- ② 외국인 채용예정자는 제1항의 증빙서류인증을 위해 출신 대학에서 발행한 학위취득증명서와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발급기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교무처장은 채용예정자의 신원 조회 또는 범죄경력을 확인한다. 다만, 외국인 채용예정자에 대하여는 외국정부가 자국민에게 취업 등 해외사용을 위해 공식적인 절차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한다.

제15조(계약세부사항)

- ① 비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한다.
 1. 근무시간 : 임용규정에서 정하는 임용기간
 2. 임금 : 임용규정에서 정한 임금
 3. 면직사유 : 임용규정에서 정하는 면직사유
 4. 재임용 요건 및 절차 : 임용규정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정한 요건 및 학과에서 정하는 재임용 조건
 5.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 필요한 사항
 - 가. 강의시간 : 임용규정에 정한 강의시간
 - 나. 복무 등 근무조건 : 임용규정이나 학과에서 정하는 근무조건
- ②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의 동의를 얻은 후 체결한 계약조건의 변경을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임용)

- ①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채용예정자의 계약사항 등을 정하며,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

제17조(연구실적 및 교육경력) 비전임교원의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인정 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<별첨1>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18조(임용 기준 등) (2020. 7. 1 자구수정)

- ① 학과장은 비전임교원 **임용심사위원회**(이하 본조에서 ‘심사위원회’라 한다)를 전임교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. 단, 비전임교원에 대한 심사위원 인원은 학과별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- ② 각 학과심사위원회에서 본교 전임교원 및 강사임용기준 등을 참고하여 **임용**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③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각 학과 비전임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**임용**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장 또는 각 학과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5장 기타

제19조(강의 제한 등)

- ① 담당 교과목에서 70점 미만의 강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1년간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다.
- ②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20조(기타)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일자부터 적용한다. 단, 이규정에서 명예교수 및 공개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비전임교원은 공개채용관련 항목은 이 시행 내규에 대한 적용을 제외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시행 내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